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시행 공고

화성상공회의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화성, 용인, 수원 지역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7일

화성상공회의소

1. 사업내용

■ 사업명 :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사업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기업지원금

■ 지원규모 : 950명

■ 지원한도 : 업체별 기준피보험자수의 50%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 단,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

■ 지원자격

- 1)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2) 만 15세~34세의 3)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 지원대상

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 라 함)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 가능

※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등

2)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3) 취업애로청년

- 다음의 취업애로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
 -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 *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도 포함
 -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⑤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⑦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⑧ 북한이탈청년
 - ⑨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⑩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채용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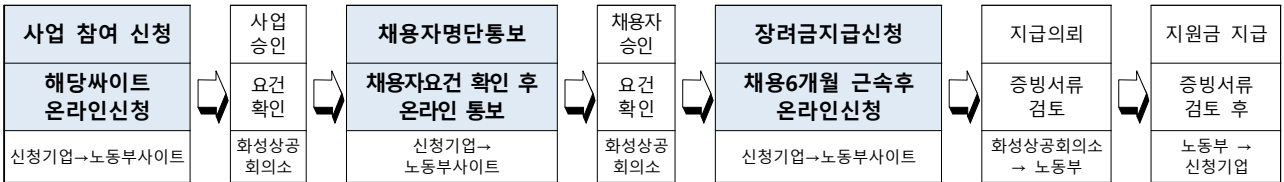
-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의사항

- 인위적감원 발생시
감원 발생 전일까지 월할 계산 후 지급, 이후 모든 참여자 지원종료 처리되므로 유의!!
- 고졸이하 학력 취업애로유형 참여자 중 채용일 기준 대학에 재학, 휴학, 중퇴(채용일 이후)일 경우,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지원금 지급액의 500% 제재금 및 처분일 기준 1년간 참여제한 등 불이익 발생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지원받은금액의 500%)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2. 추진 절차

추진절차



단계별 주요 내용 및 제출서류

단계	주요 내용	준비사항 및 관련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 신청기업→노동부사이트	고용24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로그인 후 온라인 사업 참여 신청 ※ 화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여신청 메뉴얼 참고	■ 참여신청시 제출 서류(첨부파일 업로드 필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td> </tr> <tr> <td>2</td> <td>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td> </tr> <tr> <td>3</td> <td>2022, 2023년도 중 1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 - 업력 1년 미만일 경우&면세법인 - 매출액심사 제외</td> </tr> <tr> <td>4</td> <td>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기업 해당기업 증빙 자료 각 1부 - ex)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등</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이상 사업장 - 우선지원대상 5인미만 사업장 - 사업공고 첨부파일 5인미만 가능 업종 확인 승인결과통보 - 알림톡 또는 메일 통보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	3	2022, 2023년도 중 1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 - 업력 1년 미만일 경우&면세법인 - 매출액심사 제외	4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기업 해당기업 증빙 자료 각 1부 - ex)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등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법인일 경우)																							
3	2022, 2023년도 중 1개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 1부 - 업력 1년 미만일 경우&면세법인 - 매출액심사 제외																							
4	피보험자수 5인 미만인 기업 해당기업 증빙 자료 각 1부 - ex)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등																							
② 채용자 명단제출 신청기업→노동부사이트	근로자 채용 후 온라인 제출 (사업참여신청일 기준 3개월 전 채용까지 소급 신청 가능)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로그인 후 -> 마이페이지(도약장려금) -> 채용자명단관리	■ 채용자 명단 통보시 제출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채용자명단제출서 - 채용자 변경계획서(서식5)는 채용자수 변경하는 기업만 작성 제출</td> </tr> <tr> <td>2</td> <td>개인정보동의서 (청년용) 각1부</td> </tr> <tr> <td>3</td> <td>근로계약서 각1부 -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근로시간, 주휴일, 급여 확인)</td> </tr> <tr> <td>4</td> <td>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청년용) 각1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발급가능</td> </tr> <tr> <td>5</td> <td>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부 - 대학(원) 제적일 경우, 제적증명서 추가 제출</td> </tr> <tr> <td>6</td> <td>개인정보동의서 (사업주용) 1부</td> </tr> <tr> <td>7</td> <td>중소기업 동의서 (사업주용) 1부</td> </tr> <tr> <td>8</td> <td>사업주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td> </tr> <tr> <td>9</td> <td>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청년용)</td> </tr> <tr> <td>10</td> <td>병역증명서(필요시) 각1부</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서식은 참여기업 승인 시 메일 송부 	제출서류		1	채용자명단제출서 - 채용자 변경계획서(서식5)는 채용자수 변경하는 기업만 작성 제출	2	개인정보동의서 (청년용) 각1부	3	근로계약서 각1부 -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근로시간, 주휴일, 급여 확인)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청년용) 각1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발급가능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부 - 대학(원) 제적일 경우, 제적증명서 추가 제출	6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주용) 1부	7	중소기업 동의서 (사업주용) 1부	8	사업주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9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청년용)	10	병역증명서(필요시) 각1부
제출서류																								
1	채용자명단제출서 - 채용자 변경계획서(서식5)는 채용자수 변경하는 기업만 작성 제출																							
2	개인정보동의서 (청년용) 각1부																							
3	근로계약서 각1부 - 정규직(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 근로시간, 주휴일, 급여 확인)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청년용) 각1부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발급가능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1부 - 대학(원) 제적일 경우, 제적증명서 추가 제출																							
6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주용) 1부																							
7	중소기업 동의서 (사업주용) 1부																							
8	사업주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9	최종학력 자기확인서 (청년용)																							
10	병역증명서(필요시) 각1부																							
③ 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기업→노동부사이트	채용자 6개월(9개월, 12개월) 근속 후 온라인 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인위적감원이 있을 경우 모든 채용자 지원금 중단 유의!!	■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근로계약서 각 1부</td> </tr> <tr> <td>2</td> <td>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td> </tr> <tr> <td>3</td> <td>첫달 급여 산출 내역 및 산출식</td> </tr> <tr> <td>4</td> <td>급여 이체 확인증</td> </tr> <tr> <td>5</td> <td>장려금 지급 신청서</td> </tr> <tr> <td>6</td> <td>사업주확인서(지원금 지급 신청시) - 반드시 모든 항목 체크</td> </tr> <tr> <td>7</td> <td>통장사본(지원금 수령 통장) 1부 - 온라인 신청시 기재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지확인</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1, 2-4, 5-7 서류 각 파일하나로만 첨부 가능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각 1부	2	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3	첫달 급여 산출 내역 및 산출식	4	급여 이체 확인증	5	장려금 지급 신청서	6	사업주확인서(지원금 지급 신청시) - 반드시 모든 항목 체크	7	통장사본(지원금 수령 통장) 1부 - 온라인 신청시 기재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지확인						
제출서류																								
1	근로계약서 각 1부																							
2	급여명세서 및 이체 확인증																							
3	첫달 급여 산출 내역 및 산출식																							
4	급여 이체 확인증																							
5	장려금 지급 신청서																							
6	사업주확인서(지원금 지급 신청시) - 반드시 모든 항목 체크																							
7	통장사본(지원금 수령 통장) 1부 - 온라인 신청시 기재한 계좌와 동일한 계좌인지확인																							

3. 2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 2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분		'23년	'24년
지원 대상	청년	6개월 이상 실업	4개월 이상 실업 ^{기재부}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는 청년 제외	대학(원) 졸업자는 지원대상 포함 ^{기재부}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제외)
		(신규)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지방관서}
지원 한도	30명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	30명 한도 내에서 <삭제 ^{지방관서} > 피보험자수의 50%(수도권)	
협약 방법	우편 원본 제출	참여신청 승인처리로 협약 같음 (별도 우편제출없음)	